

나의 吏讀 연구 적바림

- 吏讀는 왜 공부하는가? -

박성중 (가톨릭관동대학교 명예교수)

1. 吏讀란?

우리 나라에서 吏讀의 공식적인 사망일자는 1894년 11월 21일이라 할 만합니다. 이 날 다음과 같은 勅令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1) 第14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勅令 第1號 公文式>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漢文을 덧붙여 번역하며 혹은 國文과 漢文을 혼용한다.)

조선 왕조 전시기를 통틀어 선인들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위해 왔던 문자생활은 네 층위 - ① 한문, ② 이두문, ③ 國漢文體, ④ 순한글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①과 ②는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강대한 전과력을 가진 漢字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특히 ② 이두문은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 문서행정의 도구로서 활용돼 왔습니다. ② 이두문이 사라진 자리엔 ③ 國漢文體가 왕성하게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두의 사망일자를 조금 늦잡기도 합니다. 다음해인 1895년 5월 8일의 公文式 改正件에서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되, 漢譯을 附하며 혹은 國漢文을 混用함’이라고 천명한 것을 준거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千年을 훨씬 넘게 사용되어 온 吏讀文 아니, 적어도 吏讀式 표현이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았습니. 公文式을 포함해 재판소구성법 등이 반포되었으나 일반 민중은 물론 입법자조차도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시기였으므로 <鄭肯植(2002:43)>, ‘矣段은矣身이猝然니身病을得호와’라는 식으로 朴喜淑(1987)에서 명명하듯이 ‘國漢吏文混用體’ 즉, 國文과 漢文, 吏讀가 혼용된 문장이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 단어들을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ㅌ를 넣는 방식의 이두식 표현은 현재까지도 틈틈이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현대판 이두의 적극적인 사례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비롯해 理科 계통은 물론 심지어는 사회과학 분야 강의실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lung에 cancer가 생기면 laser mess를 가하는 op를 할지, 아니면 prescribing some drugs할지를 잘 choice해야 돼.”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말 즉 한국어임에 틀림없으나, 사이사이에 외국어 단어 또는 句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두의 본성은 바로 이 점 -- 전반적으로 국어의 어순에 따르되 異質的 요소인 단어와 句가 섞인 언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두를 좁게 해석하여 ‘-亦(이/여), -良中(아히), -沙(사/사), -是尼(이니), -是旅(이며), -是白置(이쉴두), 爲去乙(호거늘), 爲良如(호아다/호아라), 爲白遣(호쉴고)’ 등의 우리말 ㅌ만을 생각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이두에는 우리말 단어를 표기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加于(더욱/더욱), 更良(가시아), 並以/并以(아오로), 同(오힌), 導良(드디여/드디여) 望良只爲(브라기삼/브라기위), 使內白如乎(브리쉴다운)’ 등등의 수식어 및 용어는 물론, ‘庫叱(곳), 捧上(받자), 分衿(분깃), 舍音(마름)’ 등의 체언들도 출현합니다. 따라서 비록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손 치더라도 漢字를 빌려 우리말을 전반적으로 표기하고자 한 것이 곧 吏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漢字의 새김과 語順

이두를 정립시킨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漢字의 새김과 우리말 語順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house와 big를 익힐 때 ‘집 하우스’, ‘큰 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한자 家와 大를 익힐 땐 각각 ‘집 가’, ‘큰 대’라고 읽습니다. 이 경우 ‘집’과 ‘큰’은 家와 大의 뜻에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로써 해당 한자의 새김이라 일컫고, 이와 같이 漢字를 읽는 법을 가리켜 새김법, 또는 일반적으로 釋讀이라 합니다. 새김은 訓, 釋, 중세어에서 ‘사김’으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하나의 漢字에 여러 새김을 갖는 경우엔 각각의 釋에 대하여 대표적인 常用之釋으로서 訓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¹⁾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音 못지않게 바로 이 常用之釋이며, 이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漢字와 漢文을 음성언어로서가 아니라 문자언어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漢字 漢文을 우리말에 융합시키는 조금 독특한 절차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漢字와 漢文의 文語性이요, 土着化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²⁾

앞서 든 두 한자를 활용하여 ‘大家’라는 표기를 적었다면 다음의 네 가지 우리말 독법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대가, ② 대집, ③ 큰가, ④ 큰집’이 됩니다. 이 중 ①은 해당 한자를 우리식 음 즉 韓國漢字音으로 읽은 것이요, 이와 정반대로 ④는 두 자를 모두 새겨 읽은 경우이며, ②와 ③은 音讀과 釋讀을 혼용하여 읽은 것입니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일은 人名과 地名 등의 고유명사 표기였을 것입니다.

- (2) ㄱ. 買忽—云水城 <三國史記 37.3ㄷ>
 ㄴ. 水谷城縣—云買且忽 <상동 37.4ㅎ>
 ㄷ. 七重縣—云難隱別 <상동 37.3ㅎ>

(2)는 동일한 지명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표기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俗地名과 한자어 지명이 서로 다른 이중구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새터’라는 속지명이 한자 표기 지명인 ‘新基’[신기]와 공존했습니다. 이것은 발생 당대에는 ‘새터’의 釋讀표기였던 것이 어느 사이엔가 音讀하게 된 데에서 연유한 현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6.25동란 때 참전한 미군이 따로 지명 조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의 용례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두 지명에 대한 異表記들일 뿐입니다. 이들 모두가 고구려에서 이미 한자의 새김을 이용한 고유명사 표기법이 널리 행해졌음을 시사해 주며, 더 나아가 백제와 신라에도 전해져 널리 유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은 그 예입니다.

- (3) ㄱ-1. 王逢縣—云皆伯 漢氏美女迎安臧王之地故 名王逢 <삼국사기 37.3ㅎ>
 ㄱ-2. 遇王縣本高句麗皆伯縣景德王改名今幸州 <상동 35.3ㅎ>
 ㄴ. 馬突縣—云馬珍 <상동 37.9ㄷ>

1) 釋과 訓에 관한 폭넓은 용례 및 논의에 관해서는 朴秉喆(2016: 17-102) 참조.

2) 한자의 새김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비롯해 漢字와 漢文의 文語性 및 土着化에 관해서는 주로 李基文(1972) 및 李基文(2005)에 의존하였습니다.

ㄷ. 赫居世王 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삼국유사 1.12 ㅎ> (赫居世王 (赫居世란) 원래 우리말이다. 弗矩內王으로도 쓰는데,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ㄹ. 居柒夫或云荒宗 <삼국사기 44.2 ㅎ>

ㅁ. 馱靺 或作異次或云異處方音之別也 譯云馱也 靺頰道靺獨等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故 云馱靺又馱靺等也 <삼국유사 3.6 ㅈ> (馱靺 異次로 쓰기도 하고 異處라고도 하는 것은 지역음이 다른 것이요 한역하자면馱이다. 靺은 頰, 道, 靺, 獨 등 쓰는데의 편의에 따르니 어조사이다. 이에 윗글자는 한역하고 아랫글자는 한역하지 않으므로 馱靺 또는 馱靺 등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한자를 빌려 고유명사를 적을 때는 假借法에 따라 音借字를 사용해 표기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 널리 사용해 온 방법입니다. 위 예문 (2)와 (3)에 쓰인 音借표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구려 淵蓋蘇文³⁾을 『日本書紀』에서 伊梨柯須弥<권24 皇極天皇 元年二月>로 표기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차표기만으로는 고유명사가 지닌 의미의 측면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자의 새김을 이용한 표기법을 고안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어 차원을 넘어 句 또는 문장 차원의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자의 義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 각 단어의 뜻에 대응하는 한자를 늘어놓는 방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5 ㄱ). 皆無所殘此經內在 <華嚴經問答 上, 大正藏 v.45 599a> (남은 것 없이 다 이經 안에 있다)

ㄴ. 緣合不有 緣散不無故 <華嚴經問答 上, 大正藏 v.45 606a> (緣이 모여도 있지 않고 緣이 흩어져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⁴⁾

(5 ㄱ)에서 ‘無所殘’은 한문식 구성이나, 이와 달리 ‘此經內在’는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자를 늘어놓은 통사구성체입니다. 온전한 한문이라면 동사를 앞세워 ‘在此經內’로 적고, 수식하는 부사어 ‘皆’ 또한 동사 ‘在’ 앞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5 ㄴ)은 上卷의 마지막에 쓰인 문구로서, 문장 끝에 쓰인 ‘故’字는 한국어 어순을 반영한 표기로 판단됩니다. 漢文에서는 ‘故’가 문장의 꼬트 머리에 놓이는 일이 거의 없으나, 華嚴經問答에는 이와 같이 ‘故’가 文 종결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6 ㄱ). 用前世二王教/爲證尔取財物盡令節居利/得之教耳 <503年 新羅 冷水里碑 07-09行> (전세 두 왕의 교시으로써 증거하여 재물을 취하되 다 節居利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라는 교시이다)

ㄴ. 石書立人 <540年? 丹陽 新羅 赤城碑 21行> (돌에 글쓰고 세운 사람)

ㄷ.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天前誓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无誓 <612年? 壬申誓記石>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서하여 기록하니 하늘 앞에 맹서하되 지금부터 3년으로 앞으로 충성된

3) 泉蓋蘇文으로 적히기도 한 것은 唐 高祖 李淵을 避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華嚴經問答』 및 그 현대어 번역 등에 관해서는 김상현(2013)에 주로 의거하였습니다. 중국의 華嚴學僧 法藏(643~712)의 저술로 알려져 왔던 華嚴經問答은 신라 승려 義湘(625~702)이 강의한 내용을 그의 문인 智通이 기록한 것입니다. 義湘은 小白山 錐洞에서 90日 동안 화엄경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했던 제자들 중 智通이 『錐洞記』 2卷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 錐洞記는 화엄경의 내용에 관해 제자들과 스승 사이에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智通問答’ 또는 ‘錐穴問答’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본에서 大正 연간에 『新修大藏經』에 華嚴經問答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가 13세기 중엽에 天其와 그 제자들에 의해 ‘削羅言, 削去方言, 削方言’하여 漢文本으로 간행된 고려의 승려 均如(923~973)의 저술 속에 인용되어 전하기도 합니다.

도리를 지켜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예문 (6)은 흔히 初期吏讀로서 인용되는 예들입니다. 온전한 정격한문이라면 밑줄 친 부분의 문구들은 어순을 달리하여 한자를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6ㄱ)의 ‘盡令節居利得之’는 “令節居利盡得之”로, (6ㄴ)의 ‘石書立人’은 ‘書石立人’ 혹은 ‘刻石立人’ 정도로, 그리고 (6ㄷ)의 “天前誓今自”는 각각 ‘誓天前’과 ‘自今’으로 적혔을 터입니다.

이와 같이 한자를 빌려 적되 자국의 어순을 반영한 표기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ㄱ. 長利僧母爲記定文也 放光寺僧 <681 群馬縣高崎市 山上碑 5行> (長利僧이 어머니를 위하여 기록하여 定한 글이다. 放光寺의 중.)

ㄴ. 其稻在處者衣知評平留五十戶且波博士家 <7c 滋賀縣中主町 西河原森ノ内 木簡 後面> (그 벼가 있는 곳은 衣知 評 平留 50戶 且波 博士 집이다)

ㄷ. 三郡內三百戶郡成給羊/成多胡郡和銅四年三月九日甲寅/宣 <711 群馬縣高崎市 多胡碑 2-4行> (세 郡 안의 300호를 郡으로 만들어 羊에게 주어서 多胡郡을 이루다. 和銅 4년 3월 9일 甲寅에 宣함.)

따라서 이두 또는 이두문이라 할 때 단순히 고유명사를 비롯하여 物名 표기들과 더 나아가 어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자문화권 주변의 교착어 사용 지역 및 민족에게는 어느 정도 공통된 양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자의 새김법만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개별 한자에 訓과 音を 묶어 ‘하늘 텨’(天)으로 익히는 방식은 없다 하더라도 위 예문 (7)에 적힌 한자들을 모두 音으로만 읽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7ㄴ)의 評과 戶, 博士는 각각 일본어 단어 ‘こおり, さと, ふひと’ 등과 유사한 음으로 새겨 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유명사 및 物名 표기의 경우 단어의 末子音 또는 末音節을 겹쳐 표기하는 이른바 말음첨기법을 사용하여 좀더 정밀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발굴 소개된 목간들 중에서 인명 표기 ‘文戶伊, 文戶只’⁵⁾함안 성산산성 목간 07-w23/24, 06-w6>가 나타나는데, 이 안의 ‘文戶’는 ‘글’로 읽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村名으로 伊骨과 伊骨利가 적혀 있어 마지막 표기자 ‘利’가 *ikur의 말자음 또는 *ikuri의 말음절을 정밀표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가 하면 통사적 합성어인 ‘文作人’의 용례 또한 일찍이 578년으로 추정되는 戊戌塲作碑에서 발견됩니다. 이 용례는 일본에서도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의 목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시기의 용례 ‘杖刀人’과 ‘典曹人’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借字表記 과정에서 한자의 3요소 즉, 形·音·義 중 어느 하나를 변용한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자와 한문에 의존하되 그들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용법이야말로 중국어 또는 한문과 분명히 다른 언어이며 표기법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石에서 첫 획을 생략하여 만든 變造字 冫이라든가, 水田을 가리키는 合造字 ‘畚’과 일본 고유한자로 알려져 왔던 ‘畠’, 그리고 고구려에서 창고를 가리키던 ‘椽’[경] 등은 한자의 形을 근본적으로 개조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 밖에도 義를 변용시킨 ‘鎰’(중량 단위 → 자물쇠), ‘媯’(말소리 → 오라비), ‘得’⁵⁾(→ 길이 단위), 音을 바꾼 ‘尔’(미 → 금)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5) 沢/廣卅二得高八得上三得 <536년 永川菁堤碑丙辰銘 2~3行> 得을 溥으로 판독하기도 합니다.

3. 訓讀字 우선 표기의 원칙

이두를 이두답게 만드는 좀더 적극적인 요소는 吏讀吐들은 거의 예외없이 訓讀字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기이두들이 義를 이용해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해 왔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義를 이용해 우리말 새김으로 읽는 訓讀字 뒤에는 한자의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자 즉, 假字를 덧붙였습니다. 말하자면 訓讀字 + 假字의 구조로 된 것이 이두토티입니다. 용언의 경우 爲遣, 是旅, 審是-, 導良, 수식언 중에는 唯只, 須只, 加于, 右良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듯 보이는 이두토티들은 몇 가지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知想是遣, 向入良와 같은 합성동사들은 당연히 훈독자가 연속해 나오기 마련이며, 不得, 向事과 같이 발생 당시 합성어였거나 句 구성체였던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白, 有, 在’ 등 기원적으로 實辭에서 유래한 이두자들은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선행 훈독자와 통합함으로써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두문을 현대 국어의 띄어쓰기에 준하여 어절 단위로 분리해 놓고 보면, 이두토티 표기자는 거의 예외없이 訓讀字로 시작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는 예외가 더러 발견됩니다. 并以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경우엔 한문에서의 용법과 국어의 부사격조사 ‘-로’와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訓讀字 그대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訓假字로 달리 원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예외 吐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 (8) ㄱ. 旨 是絃 無亦 私丁 兵器 持是弥 <直解 13.05 ㅎ> (有旨를 가짐 없이 사사로이 병기를 지니며)
凡 邊境防禦將帥亦 旨 是絃 無亦 私音丁 軍人乙 用良 <直解 14.06 ㅎ> (무릇 변경을 수비하는 장수가 유지를 가짐 없이 사사로이 군인을 부러)
- 凡 諸君宰樞亦 旨 是絃 無亦 <直解 14.11 ㅈ> (무릇 왕족과 대신이 유지를 가짐 없이)
- ㄴ. 旨 是絃以 開閉者乙良 勿論罪爲乎 事 <直解 13.08 ㅎ> (유지를 가지고 있어서 궁궐 내 성문을 열고 닫은 자는 논죄하지 말 것)

필자는 1986년 가을 박사과정에서 故 安秉禧 선생님께서 해 주신 『大明律直解』 강독을 통해 처음 이두를 접했습니다만, 두어 달 晩松文庫本 영인본을 들고 다니면서 기말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암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어렵게 찾아냈던 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뜻이 잘 파악되지 않는 건 차치하고 훈독자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8ㄴ)의 ‘是絃以’에서 ‘是絃’이 명사형이므로, 이것이 이른 시기의 ‘-ㄴ’ 동명사어미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제출했던 기말과제물은 추후 보완을 거듭하여 拙稿(1987)로 남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絃如가 이두토티 원칙에 어긋난 字를 앞세우게 된 까닭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矣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이게 된 데 원인을 박사학위논문과 拙稿(2016: 227-230)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訓讀字로 시작하지 않는 이두토티들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 ㄱ. 一應外方應騎員人 到任即時 各其觀察使節度使 道以 監封輸送爲良在等 觀察使節度使亦 到付日月并錄 尙瑞院以 移文上送爲乎矣 <1571.3.29. 兵曹承傳 各司受教 110> (외방에서 역마를 타야 하는 모든 관

원이 부임지에 도착하는 즉시 각 해당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도로 (마패를) 감봉하여 보내면 관찰사나 절도사는 도착한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 상서원으로 移文하여 올려 보내되)

ㄴ. 所犯人乙 當爲 銀二十兩 生徵 進告人乙 充賞爲齊 <1395 大明律直解 02.04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은 20냥을 징수하고 신고인에게 상으로 주며)

ㄷ. 禮亨 更推 白等 嚴刑施威次 直爲所如中 日月不記 壬子年分 矣身 以夫飴饌次 獨坐廚間抹樓之時 <1679.2.22. 계목 승정원일기> (禮亨을 다시 추문하니, “아뢰옵건대 엄히 죄를 묻사오니 바른 대로 고하자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임자년에 제가 남편 찬을 차리려고 혼자 부엌 마루에 앉아 있을 때)

(8ㄱ)의 ‘道以’는 이두토 표기 원칙에 따르자면 마땅히 ‘*廻于’ 또는 ‘*廻以’ 정도로 표기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어 ‘도로’라는 우리말의 음상에 이끌려 음차자 道를 앞세운 違格의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와 달리 (8ㄴ)과 (8ㄷ)에 쓰인 ‘當爲’와 ‘直爲所如中’의 경우엔 첫 字가 그 義에 맞게 쓰였으나 우리말 단어로 새겨 읽지 않고 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시기를 감안해 볼 때 ‘當爲’의 當은 그에 해당하는 고유어 새김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8ㄷ) ‘直爲所如中’의 直은 이두 독음자료 및 학습서들에서 ‘딕’ 또는 구개음화한 ‘직’으로 읽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한자어의 영향과 간섭을 심하게 받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4. 吏讀文에서 漢文으로

조선 건국 후 곧바로 趙浚이 주도하여 1397년(태조 6)에 편찬 간행한 『經濟六典』은 이두문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후에 方言六典 또는 吏讀元六典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두토들을 삭제한 한문본으로 개간되었는데 世宗은 河崙이 이두를 삭제하고 편찬한 법전의 한문이 꺾꺾한 면이 있으므로 經濟六典을 되살려 쓰려 했습니다. 그래서 經濟六典의 강원도 刻板을 보수하여 인출 반포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河崙의 詳定元六典은 쓰지 말도록 명한 적이 있습니다.⁶⁾

조선조에서 국왕의 가르침과 명령이라 할 만한 傳敎와 判付를 모아 놓은 것을 受敎라 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식 법령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즉, 受敎 → 錄 → 大典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던 受敎에서 이두토들을 삭제하고 한문으로 바뀌어 정착되었는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9) ○ 癸丑三月初十日 承 /傳內 相避之法 載在令甲爲有去乙 ……至爲寒心 今後 因訟者歸咎 及 法外 相避以 啓移他司者乙良 承政院弋只 一、請推治爲乎矣 不察色承旨 并以 推考治罪 以杜紛紜之弊爲只 爲 司憲府 傳敎 <『各司受敎』 刑曹受 敎 131> (계축년(1553, 명종 8) 3월 10일에 받은 전교에, “상피하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거늘 …… 지극히 한심하다. 이후에는 소송한 사람의 허물로 돌리거나 법을 벗어난 상피를 이유로 계청하여 다른 관사로 옮기는 자는 승정원에서 하나 하나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되, 제대로 살피지 않은 담당 승지도 함께 추고하고 죄를 다스려 어지러워지는 폐단을 막도록.” 사헌부에 전교하셨다)

이두문으로 작성된 위 수교가 削吏讀의 과정을 거쳐 한문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일부 보이

6) 세종실록 13년(1431) 5월 13일 丙子條.

7) 인용문은 편의상 띄어쓰되 /는 擡頭(이 경우엔 一字擡頭), 두 칸 이상 띄운 곳은 空格을 두었음을 가리킵니다.

년 다음과 같습니다.⁸⁾

- (10) ㄱ. 因訟者歸咎 及 法外相避以 啓移他司者乙良 承政院弋只 一一請推治爲乎矣 <1553 수교>
- ㄴ. 因訟者歸咎 及 法外相避 啓移他司者 承政院 一一推治 <1585 『詞訟類聚』 相避 受教>
- ㄷ. 因訟者歸咎 及 以法外相避 啓移他司者 政院 一一推治 <1698 『受教輯錄』 918>
- ㄹ. 或因訟者歸咎 或以法外相避 啓移他司者 承政院 察治 <1746 『續大典』 刑典 聽理>
- ㄱ-2. 不察色承旨 并以 推考治罪 以杜紛紜之弊爲只爲 <1553 수교>
- ㄴ-2. 不察承旨 并 推考治罪 以杜紛紜之弊 <1585년 『詞訟類聚』 相避 受教>

(10ㄱ-2)를 削吏讀한 (10ㄴ-2)와 대비해 볼 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不察承旨并推考治罪’입니다. 전자에서는 推考의 대상였던 ‘不察承旨’가 후자에서는 오히려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인지 『受教輯錄』과 『續大典』에서는 뒷부분을 삭제하였음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10ㄷ)에서는 한문투에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以 자를 덧붙였고, (10ㄹ)에서는 及 자를 빼고 或 자를 두 명사구 앞에 덧붙임으로써 한문에 좀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고전한문과는 어딘지 다르며 우리말 어순을 감안해 읽어야 쉽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이두토들을 빼고 한문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대표적인 名賢들의 문집들도 후손들이 간행하는 과정에서 원문과는 달리 이두를 삭제하여 한문투로 전제하곤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영남대학교 故 李樹健 선생님께서 누차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문집의 경우 이두토가 들어있거나 이두문을 그대로 전제한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退溪先生文集』 권8에는 豐基郡守 재직 시에 신병으로 말미암아 監司에게 체직을 요청하는 서장을 비롯해 임금께 올린 체직 요청 啓辭들 중 이두문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 전체 51건 중 34건이나 발견됩니다. 전제 과정에서 文字式에 따른 상투적인 표현들은 제외하였고 이두토의 사용 빈도에 편차를 보이긴 합니다만 이 중 5건은 그 내용이 실록에 전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정격 한문과는 분명히 조금 다른, 일면 어색한 한문은 원래 吏讀文으로 되어 있던 것을 漢文으로 바꾸어 수록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좀더 연구할 필요성을 일찍이 藤本幸夫(1978)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退溪先生文集』에 실린 이두문과 『明宗實錄』에 전제된 啓辭, 그리고 『壬辰狀草』의 첫 啓本과 『李忠武公全書』에 전제된 것을 대비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래 예문 (11)은 전자의 첫머리입니다.

- (11ㄱ) 臣矣段 多年重病以 節 大司成除授後 必于 經涉二朔爲白良置 <『退溪先生文集』 8.11>
- 臣 以多年重病 前爲大司成除授時 雖經涉二朔 <1558 『明宗實錄』 13년 12월 8일 庚戌>

이두문과 그로부터 변형된 韓國漢文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는 『壬辰狀草』와 『李忠武公全書』에 비길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忠武公 李舜臣이 임금과 세자에게 올린 啓文과 達文들을 등서해 놓은 『壬辰狀草』는 이두문의 원 모습은 물론 문서의 원형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文字式에 맞추어 3行式으로 작성하였으며 擡頭와 空格 등을 제대로 맞

8) (10ㄴ)의 『詞訟類聚』는 관찬 자료가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보입니다.

추어 등서해 놓았고, 본인을 지칭하는 臣 자는 당연히 작게 쓰는 등 원자료로서의 가치를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休紙를 이용한 『亂中日記』의 여백에 적힌 기록 등을 통해서 문건을 이두문으로 기초하고 교정한 이가 바로 忠武公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졸고(2017) 참조>.

이두문을 저본으로 하여 변형시킨 韓國漢文은 정격의 고전한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꺾꺾럽고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인용문 (12)는 이러한 사정을 잘 웅변해 주며, (13)은 변형 과정에서 어순으로 인해 술어 동사 ‘分給’의 주체를 혼동하기 쉬운 예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12) 全書의 장계는 본시 그 草本에 의거하여 채록되었지만 吏讀로 된 토를 다 뽑아버리고 漢文만 남겨 놓은 것이라 토를 위 아래로 잘못 떼면 큰 망발을 하기 쉬운 점이 많고 또 중간 중간이 줄어서 문맥이 잘 안 통하는 데도 많으며 잘못 기사된 글자도 나오므로 그것을 전부 수정해 놓는 데 애를 썼다. <李殷相(1989: 127)>

(13) ㄱ. 倭物段 …… 等雜物乙仍于 搜得軍卒等亦中 惠伊 分給爲白有齊 <1594.3.10. 狀67 49-50>
 ㄴ. 倭物 …… 等雜物故 搜得軍卒等 各各 分給 <『李忠武公全書』 4.24>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사료들 가운데 한문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두문 또는 이두토를 넣어서 작성했던 문장을 바탕으로 일부 변형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韓國漢文의 존재와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Ross King(2018)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의 관련 연구성과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⁹⁾

5. 이두토의 讀音

예문 (14)는 茶山 丁若鏞의 『欽欽新書』 중 剪跋蕪詞에 실린 殺獄 사건들 중 하나로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會查官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丁若鏞이 조사하여 보고한 查報狀의 말미에 적은 跋辭 중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이두토 ‘是乎乙遣’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용례입니다.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의문법 형태가 될 수 없으므로 ‘이올고/이올꼬’로 읽을 경우 그에 적합한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14) 指一歸重 則難免猜摸 易涉牽強是乎乙遣 設令日宅之罪 較重一分 太寬之罪 較輕一分 論其所差 宜不相遠是去乙 <『與猶堂全書』 欽欽新書 권10.4> (한 사람을 지목하여 무겁게 하면 근거 없는 의심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건강부회하기 쉽고, 설령 (金)日宅의 죄가 비교적 한 푼 더 무겁고, (朴)太寬의 죄가 비교적인 푼 더 가볍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를 논하면 마땅히 그리 크지 않거늘)

따라서 이두토 ‘是乎乙遣’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是白遣’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是白遣’는 동일한 剪跋蕪詞 안에 여러 번 쓰였는데, (15)가 그 중의 한 예입니다.

(15) 我等於此 始知厥漢之爲金哥是白遣 我等力弱任重 令金哥助力同載是乎則 <상동 권10.9> (우리들은

9) 이것은 북한에서 洪起文 선생이 주도하여 지속해 왔던 전통고전의 현대어 번역 사업의 소산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비로소 그 사내가 김가란 것을 알았고, 우리들 힘은 약하고 짐은 무거워 김가에게 ‘신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결국 (14)의 ‘是乎乙遣’는 당연히 ‘是白遣’로 표기되었어야 할 터인에 그 독음에 이끌려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표기였다고 판단됩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이두토의 독음을 한글로 표기한 자료들 중 일부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이화숙(2009)를 통해 동일한 爲白齊에 대한 독음이 놀랍게도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확인하였습니다.

爲白齊의 독음이 18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 『덩니의궤』에서는 ‘ᄃᆞᆫᆫᆞᆫ’와 ‘ᄃᆞᆫᆞᆫ’, 그리고 1828년의 『즈경년진작정례의궤』에서는 ‘ᄃᆞᆫᆞᆫ’로 쓰여 있습니다. 같은 문헌 안에서 두 종류의 독음이 섞여 있다는 사실도 다소 의아할 정도입니다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미 이두토 爲白-의 독음이 ‘ᄃᆞᆫᆞᆫ’, ‘ᄃᆞᆫᆞᆫ’, ‘ᄃᆞᆫᆞᆫ’로 나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두에서 흔히 경어법 어미로 쓰이는 ‘-白-’의 독음이 세 계열 즉, ‘-ᆞᆫᆞᆫ/ᆞᆫᆞᆫ-’로 나뉘는 데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줄고(2019) 참조>. 그리고 동국대본 『吏文』(1658)에서 爲白齊, 爲白去等, 是白乎脉를 각각 ‘ᄃᆞᆫᆞᆫᆞᆫ’, ‘ᄃᆞᆫᆞᆫᆞᆫ’, ‘ᄃᆞᆫᆞᆫᆞᆫ’로 읽은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白-을 ‘-ᆞᆫᆞᆫ-’으로 읽은 계열도 있었을 터인데 이것은 의고적인 독법 ‘-ᆞᆫᆞᆫ-’에 묻혀서 전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두토 爲白-의 독음 세 계열 ① ‘ᄃᆞᆫᆞᆫ-’, ② ‘ᄃᆞᆫᆞᆫ-’, ③ ‘ᄃᆞᆫᆞᆫ-’ 중 ①이 전통적인 독법이고, ②와 ③은 현실 언어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②는 『吏文大師』로부터 『典律通補』의 영향을 주로 받은 독음이고 ③은 주로 『古今釋林』의 영향을 받아 이어진 것으로 정리할 만합니다. 결국 ①의 독음을 반영하고 있는 『吏讀便覽』의 존재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安秉禧(2001)에서 잘 밝혔듯이 18세기 후반에 王命으로 편찬되었으나 간행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두 독음을 균일하게 확정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가 통치의 기본 문자수단였던 이두에 대해 표준독음을 비롯해 중앙집권적 형태의 규제와 조치 등이 없었던 정황 등에 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조선조 후기 이두 자료의 편린

조선조 후기로서 근대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두 자료의 양은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마치 조각배 하나로 그지없이 너르디 너른 태평양 바다를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라고나 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에 대해 참조할 만한 국어학계의 기초적인 토대나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료 소개는 물론, 오래 전에 나온 吳昌命(1987)과 趙和(1989)를 제외하고는 주요 자료들에 대한 색인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색인 작업과 같은 기초적인 업적을 연구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학계의 전반적인 풍토에 기인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간행하고 있는 『古文書集成』은 조선조 후기 이두 연구에도 가장 우선적인 寶庫라 할 만합니다. 이두의 본령이 문서인 만큼 각 지역의 개인 문중을 비롯하여 향교, 서원 등의 기관 소장 고문서들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영인하여 간행하는 이 연속물이야말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120여 책이 간행되었으며 문서의 종류별, 그리고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

어 이두문으로 작성된 문서들을 열람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의 대부분 입력한 원문을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현대어 번역을 보여주고 있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古文書集成』 말고 우선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기록해 온 編年 기록물들입니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推案及鞫案입니다.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약 300년 가까이 의금부에서 중죄인에 대하여 심문하고 판결한 내용을 기록한 총 331책의 巨帙입니다. 단정한 楷書로 기입하였으며, 대체로 사안별로 한 권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국에 참여한 위관과 문사낭청 등의 관원 명단을 적은 다음에 심문하고 답변한 추국의 내용, 신하들이 의논하여 올린 議啓, 국왕의 批答, 그리로 처리 결과인 結案의 순서로 기재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상과 주모자들의 의도와 생각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 점에서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조선왕조실록』 등의 공식 관찬 사료들에서 보이는 집권 권력층의 입장과는 다른 면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규장각 소장으로서,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아세아문화사에서 30책으로 영인 간행했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주대학교 변주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팀이 2014년에 총 90책으로 역주본을 출간하였으며, 원문을 입력한 것이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供招記錄物로서 심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주된 만큼 白等, ~教事, ~教是臥乎在亦 등 반복 출현하는 이두토틀들이 많긴 하나 白良乎, 直爲所如中 등 종전 시기에서는 찾아보지 못 하던 용례들도 눈에 띄는 등 조선조 후기의 시기별 이두 연구에 매우 긴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각종 謄錄類들도 고찰의 대상임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들은 비록 원자료가 아니고 문서식의 起頭와 末尾의 투식적인 부분들은 제외한 채 전제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이두 자료로서의 충실도가 흠 잡히지는 않습니다. 1577년(선조 10)부터 1910년까지 약 330여년간 각 지방의 관아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모아 편찬한 『各司謄錄』을 비롯하여 『義禁府謄錄』과 捕盜廳謄錄類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각종 物名 표기들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곧잘 활용되는 儀軌들 안에는 관련 都監에서 주고받은 이두문으로 작성된 공문들이 수록돼 있어 참고됩니다.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의궤는 현재 총 600여 종으로서 1601년부터 1928년분까지 남아 있으므로 각 시기별 文書式과 이두토 사용의 변천 여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17세기 전반의 개별 자료로서는 『瀋陽狀啓』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淸 나라 瀋陽에 볼모로 잡혀간 왕세자 일행이 1637년 2월 한양을 떠나 도착하는 과정에서 1643년 말까지 심양에서 생활하면서 겪으며 보고들은 일들을 국왕에게 보고한 狀啓를 모은 것입니다. 정본과 부분 두 종류가 규장각에 소장돼 있으며, 세자시강원의 宰臣이 승정원에 보고하는 형식의 이두문으로 작성된 狀啓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17세기 전반 이두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漢韓大辭典』 간행에 앞서 미리 펴낸 『韓國漢字語辭典』(1992~94)은 韓國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1977년부터 故 李熙昇 선생님을 필두로 이강로 교수님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당대의 漢學者들 및 碩學들이 熱과 誠을 다하여 이룩한 업적입니다. 비록 이두를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

전을 펴낼 때 출전으로 한 문헌들 일람표가 朴燦圭(2012)에 제시돼 있기에 조선조 후기 이두 자료들의 간소한 소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7. 마무리

副題인 ‘吏讀는 왜 공부하는가?’에 좀더 가까이 맞추어 기술하려면 名詞文으로서의 특성, 吏讀史의 기술을 위한 기초적 논의, 이두문에서 외래적 요소의 개입과 그 변천 등의 문제를 더 다루어야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 대신 필자가 이두 연구를 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켜 왔던 원칙,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 한두 마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시했던 대원칙 중의 하나는 반드시 최대한 原典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니다. 原資料를 열람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영인된 것이 라도 반드시 보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문서를 작성하거나 필사할 때 어휘 및 문법형태에 기대지 않고 전통적으로 갖추었던 비언어적 예의갖춤법이 있습니다. 別行과 空格, 擡頭, 字小法이 이에 해당되는데, 백두현(2015: 196~198)에서 각각 ‘줄바꿈법, 칸비움법, 글자올림법, 字小法’으로 용어를 깔끔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일제강점기 때 나온 활자본 간행물에서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후로 관행이 되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한자의 행위주체 또는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연구자가 다른 한국학이나 한국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일은 이두토와 이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두토의 讀音도 포함됩니다. 졸고(2019)에서 掌隸院을 ‘장례원’으로 읽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설명하고 이두자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 이것은 표준한자음을 의식함과 동시에 白等を ‘삼등’ 정도로 읽고 본래의 기능 및 의미와 다르게 풀이하는 일을 바로잡으려는 일환이었습니다.

이제 필자는 이두 연구 및 이해를 위한 기본 工具書 즉, 견실한 吏讀辭典을 편찬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마침 금번에 몇 분이 애쓰셔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이두사전이 간행된다고 하여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두토 표제어들을 선정 등재하고 거기에 걸맞는 용례들을 대비 및 확인하는 등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2015년 2월, 그러니까 3년을 앞당겨 퇴직하는 마당에서 행한 고별강연에서 5년 안에 이두사전을 펴냈으면 한다는 소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食言을 한 셈이 돼 마음이 아픡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앞서 언급한 조선조 후기 이두 자료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듣성듣성이나마 일단 마감하고, 다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여 년 더 걸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차 마감하는 데까지는 현재 5년을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국어사와 국어학 분야 연구자들이신 만큼 두 번 다시 食言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상현(2013), 『교감번역 화엄경문답』,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金剛學術叢書 12, 씨아이

알.

南豊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다산학술문화재단 흠흠신서연구회(2017), 『역주 『흠흠신서』 「전발무사」 편』, 사암.

朴秉喆(2016), 『한자의 새김과 千字文』, 태학사.

박선이(2016), “朝鮮式 漢文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小考 -임진왜란 시기 狀啓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6.

朴盛鍾(1987), “大明律直解의 「旨是絃無亦」과 「旨是絃以」에 대하여”, 『國語學』 16, 국어학회.

_____(1989), “『瀋陽狀啓』 吏讀 索引”, 『關東語文學』 6집, 관동대 관동어문학회, 97~120쪽.

_____(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_____(2017), “吏讀文에서 韓國漢文으로의 변형 - 『壬辰狀草』와 『李忠武公全書』 啓文의 대비”, 학술원논문집 제56집 2호, 대한민국학술원.

_____(2018), “고대 한국어 표기에서의 變體漢文과 吏讀”, 『한국어사 연구』 4, 국어사연구회.

_____(2019), “吏讀吐의 讀法과 그 한글 讀音 표기에 대한 管見”, 『國語學』 90, 국어학회.

朴燦圭(2012),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구결·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 『東洋學』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朴喜淑(1987), “19世紀 末葉의 所志文書의 吏讀 : 江陵郡守 李會源 白活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59·60,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安秉禧(1987ㄷ), 『吏文과 吏文大師』, 탐출판사.

_____(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書誌學報』 25, 한국서지학회, 5-34.

吳昌命(1987), 備邊司謄錄의 吏讀研究,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대학원.

오창명(2017),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개관”, 『口訣研究』 39, 구결학회.

李基文(1972),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11, 서울대 문리과대학 東亞文化研究所.

_____(2005), “우리 나라 文字史의 흐름”, 『口訣研究』 14, 구결학회.

이승재(2009), “木簡과 國語學”,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李殷相(1989), 『完譯 李忠武公全書』 上·下, 成文閣.

이화숙(2009), 『조선시대 한글 의궤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鄭肯植(2002), 『韓國近代法史攷』, 博英社.

정하영 외 역, 이강로 감수(2008), 『심양장계 - 심양에서 온 편지』, 서남동양학자료총서, (주)창비.

주보돈(2009), “한국의 木簡研究 30년, 그 成果와 展望”,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최연식(2015), “『華嚴經問答』의 變格漢文에 대한 검토”, 『口訣研究』 35, 구결학회.

최연식(2016), “新羅의 變格漢文”, 『木簡과 文字』 17, 한국목간학회.

犬飼隆(2014), “古代日朝における言語表記”,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國立歷史民俗博物館·小倉慈司 編(2016), 『古代東アジアと文字文化』, 同成社.

國立歷史民俗博物館・平川南 編(2014),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平川南 編(2005), 『古代日本 文字の来た道』, 大修館書店.
藤本幸夫(1978), “朝鮮漢文 - 吏讀文からの承華”, 『古文』 34.

Ross King(2018), ‘Literary Sinitic with Korean Characteristics’? ; An Overview of Research on Chosŏnsik hanmun 朝鮮式漢文, with a focus on Recent North Korean Studies.